

사단법인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

(2021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)

1. 일시 :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

2. 장소 : 온라인(ZOOM)

3. 임원 출석 현황

- 상임이사회 재적인원 50명 중 출석 22명과 위임 11명을 포함해 총 33명 참석
 - 출석: 22명

직책	성명	직책	성명
회장	오응수	상임이사	한진욱
	박성준		조성균
부회장	김종백		한준영
	한남희		최윤석
	전용배		김애랑
	주종미		김현일
	정병기		정태욱
	이정학		이광용
	남상백		백승현
부회장 / 사무총장	김일광		김석규
감사	김상유	고문	박세혁

－ 위임: 11명

직책	성명	직책	성명
부회장	김도균	상임이사	이원재
	조송현		박성수
	강현민		박성배
	김기한		김옥기
지부학회장	조성호		김진국
	편도영		

※ 재적이사 2/3 이상 출석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(정관 제5장 제32조)

4. 안건

4.1 보고사항

- 평생회원
- 업무 협약 추진
- 하계세미나 개최
-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기념 제59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 참가
- Asian Association for Sport Management(AASM)
- 편집국 관련 사항
- 故 전호문 교수 추모
- 임원회비 미납 현황
- 회장 선출 추진사항

4.2 심의사항

- 동계 학술대회 개최(안)

- 이사회, 상임이사회, 정기총회 개최(안)
- 2021년도 공로상 및 학술상 시상(안)
- 제18대 회장 후보 선정(안)
- 정관 개정(안)
- 기타 논의사항

5. 회의 내용

5.1 Asian Association for Sport Management(AASM) 관련

-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AWARDS 제안
 - ▶ 최윤석 국제이사 제안
 - ASSM 참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50만원 ~ 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 하는 'KSSM AWARDS' 제정 안 제안
 - ▶ 김일광 사무총장
 - 다음 상임이사회에서 추가적인 논의 및 의결을 하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표명
 - ▶ 김현일 상임이사
 - 최윤석 국제이사의 제안 내용을 정식 안건으로 제정 후, 상임이사회 의결 요구
 - ▶ 오응수 회장
 - 보고사항인 만큼 추후 논의 및 의결사항에서 KSSM AWARDS 논의 필요
 - ▶ 결론
 - 추후 논의 및 의결사항에서 논의

5.2 편집국 관련 사항

○ 논문 투고 및 게재 현황 관련

- ▷ 김현일 상임이사 의견
 - － 논문 투고 및 게재 현황을 보았을 때, 게재건수를 유지하기 위한 편집국의 개입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 표명
- ▷ 한진욱 편집위원장 의견
 - － 편집국은 심사위원을 배정할 뿐, 투고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다는 의견

5.3. 동계학술대회 개최(안) 관련 의결

- － 의결(통과)

5.4. 이사회, 상임이사회, 정기총회 개최(안) 관련 의결

- － 의결(통과)

5.5. 2021년도 공로상 및 학술상 시상(안) 관련 의결

- － 의결(통과)

5.6. 제18대 회장 후보 선정(안)

○ 제18대 회장 선거 관련

- ▷ 김현일 상임이사 제안
 - － 올해는 한 분의 회장만 선출하고, 제19대 회장부터 새로운 정관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 제안
- ▷ 한준영 상임이사 제안
 - － 현 정관 내용을 바탕으로, 올해 제18대, 제19대 회장 두 분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 제안

- ▷ 오응수 회장 제안
 - 현 정관 내용을 바탕으로 할 시, 정기총회에서만 회장을 선출할 수 있으므로, 올해는 제18대, 제19대 회장을 선출하고 2년 임기 안을 통과시켜 2022년에 2년 임기 회장을 선출 할 시, 정관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의견
 - 회장선거도 중요하지만, 2년 임기에 의결 여부가 중요하고, 적용시기를 언제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함
- ▷ 김일광 사무총장 제안
 - 제18대, 제19대 회장직을 추대 또는 선출하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하고, 오늘 제3차 상임이사회 자리에서 의결 사항으로 결정하는 것을 제안
- ▷ 김현일 상임이사 제안
 - 오늘 제3차 상임이사회 자리에서 1안) 제18대 회장직을 추대 또는 선출하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, 2안) 제18대, 제19대 회장직을 추대 또는 선출하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, 2가지 안을 놓고 의결을 하자는 의견
 - 다만, 2안) 선정 시, 입후보 과정을 다시 진행하고 입후보 자격도 삭제해야 추후 문제시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 표명
- ▷ 이광용 상임이사 제안
 - 올해는 한 분의 회장(제18대)만 선출하고, 상임이사회에서 하루빨리 회장 임기(1년 or 2년)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
- ▷ 전병기 부회장 제안
 - 올해는 한 분의 회장(제18대)만 선출하고, 상임이사회에서 하루빨리 회장 임기(1년 or 2년)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
- ▷ 김종백 부회장 제안
 - 정관 개정 시, 즉시 효력이 발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, 정관 개정과 회장 선출을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.
 - 올해 한 분의 회장만을 선출할 시, 정기총회 전까지 선거운동 기간, 선관위

구성 등을 해야 하는데,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.

- 만약 정기총회에서 회장 선출 못할 시,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데, 임시총회에 대한 개최여부 또한 정확하지 않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

▷ 전병기 부회장 제안

- 정기총회 당일, 출마하신 입후보의 출사표 및 포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선거 전에 구성하고, 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

▷ 한남희 부회장 제안

- 정기총회에서 회장 투표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
- 올해 한 분의 회장만을 선출하고, 정관개정 후 제19대 회장 선거하는게 어떻하냐는 의견

▷ 박성준 전 회장 제안

- 정기총회에서 회장 투표를 하는 것보다 입후보들의 사전 협의 및 조율을 통해 회장 선출하는 것이 어떻하냐는 의견

▷ 전용배 부회장 제안

- 정기총회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후 후보 추천을 선거, 투표 자격 및 투표율을 산정 후 선거 등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.

▷ 김현일 상임이사 제안

- 정기총회 전까지 입후보들간의 조율 후, 정기총회에 참석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
- 만약 조율이 안될 시, 전병기 부회장 의견과 같이 정기총회에서 출마하신 입후보의 출사표 및 포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선거 전에 구성하고, 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

▷ 전병기 부회장 제안

- 제18대 회장(임기 1년) 회장 후보 추대 안 의결 상정

○ 제18대 회장(임기 1년) 회장 후보 추대 안 의결

- 찬성(9명), 반대(1명)

▶ 결론

- 제18대 회장 후보는 2명의 입후보자 중 한 후보자만 제18대 회장직으로 추대하는 것으로 결정

5.7. 정관 개정(안) _ 11.25.17.48// 수정 해야함

○ 제11조(임원의 선임) ⑥ 관련

▷ 김일광 사무총장 의견

- 해당 정관개정안은 정관개정위원회에서 현재의 임기가 있는 상임이사 중 차기 상임이사회 임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건에 대한 상임이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함

▷ 김현일 상임이사 의견

- 차기 혹은 현재와 같은 시기적인 문제는 상임이사회 회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, '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한다'라는 문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

▷ 오응수 회장 의견

- '임기 개시 후 2개월 이내'를 삭제하는 것이 어떻하냐라는 의견

▷ 김현일 상임이사 의견

-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총장 및 사무국 관련 정관은 개별적으로 조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

- ▶ 전용배 부회장 의견
 - 상임이사회가 2월 중에 개최된 전례가 없어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
 - 정관개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의견
 - ⑥을 삭제하는게 어떻하냐는 의견
- ▶ 김현일 상임이사 의견
 - ⑥을 삭제할 경우, 회장의 월권이 발생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 ⑥조항 삭제에 대한 반대 의견
- ▶ 전용배 부회장 의견
 - 상임이사회 임원 수가 50명이 넘고, 이사회는 100명이 넘기 때문에 월권 및 오남용은 불가하다. 이러한 이유로 본인은 정관개정위원회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하고,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다라는 의견
- ▶ 김일광 사무총장 의견
 - 해당 정관개정안은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정관개정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논의를 하여 최종적으로 구성하고자 한다

○ 제14조(임원의 임기)

- ▶ 전용배 부회장 의견
 - 회장 선출과정에서 추대 또는 선거로 진행할 경우, 사무국 측에서 공지를 진행하고, 입후보들은 최소 6월부터 선거 관련 준비를 시작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
- ▶ 오응수 회장 의견
 - ‘상임이사회 임원의 3분의 1이상의 추천’ 혹은 ‘과반수’라는 내용을 정관에 기입하면 어떻하냐라는 의견

▷ 전용배 부회장 의견

- ‘상임이사회 임원의 3분의 1이상의 추천’ 혹은 ‘과반수’라는 내용을 정관에 기입하게 되면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, 정관 자체를 바꿔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
- 이에 해당 내용을 정관보다 회장 선출 관련 세칙을 별도로 마련한다면 해결될 것 같다는 의견 제안

○ 제43조(법인해산)

▷ 김일광 사무총장 의견

-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는 수익적 측면에서 활로를 열어두기 위해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지만, 실제로 수익과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없어 사단법인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

▷ 오응수 회장 의견

- 지금은 현행을 유지하고 추후에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때 하는 것이 어떻하냐라는 의견

○ 회비에 관한 규정

▷ 김일광 사무총장 의견

- 임원이 평생회원인 경우에 연 임원회비에서 정회원비(4만원) 감면한다는 안을 추가하였습니다.

▷ 전용배 부회장 의견

- 정관에 넣는 것보다 정관 개정위원에서 해당 내용을 시행 세칙이나 운영세칙에 기입하는 게 어떻하냐라는 의견

▷ 김일광 사무총장 의견

- 전용배 부회장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관보다 세칙에 넣는 방안을 정관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

○ 추가 논의사항(세칙: 회장 기부금 제도 및 금액)

▷ 남상백 부회장 의견

- 새로 선출되실 회장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기존 정관 내용과 중복이 아닌가라는 의견

▷ 김현일 상임이사 의견

- 다음 회의에서 대면하여 의논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

○ 제5조(회원의 종류와 자격)

▷ 김현일 상임이사 의견

- ‘단체 및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단체’에서 ‘그 외 단체’를 기입하는 게 어떻하냐는 의견